

학부모위원 선출공고

진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진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

1. 입후보 등록

가. 자격 :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



국가공무원법 제33조

● 제33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난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난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난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난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난지 아니한 자

* 결격사유 유무조회 방법

-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(www.share.go.kr)를 통한 결격 사유 유무 및 범죄경력조회 실시
-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및 지역위원회 추천 시 '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' 제출 안내 및 징구 필

나. 장소 : 진봉초등학교 학부모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(행정실)

다. 기간 : 2022년 3월 4일 ~ 3월 11일까지(09:00~16:30)(8일간)

라. 구비서류 : 입후보자 등록서,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(행정실 비치, 학교홈페이지 탐색)

2. 위원선거

가. 선거일시 : 2022년 3월 18일 (13:00 ~ 16:30)

나. 선거장소 : 진봉초등학교 시청각실

다. 선거방법 : 우리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(학부모총회에서 직접투표 선출 또는 가정통신문이나 우편투표 병행, 당선자 결정방법 등)

라. 학부모 위원 정수 : 2명(초등2명)

- 마. 소견발표 : 선거전에 후보 1인 3분간 소견 발표 (입후보자 등록 순에 의함)
바. 선거인 명부 열람 : 2022년 3월 12일 ~ 3월 15일 (행정실)

3. 당선자 발표

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(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)

2022년 3월 4일

진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